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성주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-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-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표창 및 시상
- 기업 단체의 창립 권장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
-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,000천원 정도

다. 성별영향평가 : 원안가결

라. 규제심사 : 원안가결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.(2015. 5. 28. ~ 2015. 6. 18.)

바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재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

○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

- 안 제4조(기업 등의 지원)에서 행·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,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표창 및 시상, 기업단체의 창립 권장 및 활동에 관한 사항,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,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 결과 상위법인 「중소기업 기본법」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